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현대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투자원본 손실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 합 투 자 기 구 명 칭 :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집 합 투 자 업 자 명 칭 : 현대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hyundai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2년 10월 1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2년 10월 27일**
6. 모 집 (매 출) 증 권 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종 류 및 수
(모집 또는 매출 총액)
7. 모 집 (매 출) 기 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판 매 기 간)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투자설명서]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www.hyundaiam.com), 각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며,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정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의 정리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펀드코드 : 15869)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현대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투자원본 손실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2. 투자전략

■ 운용전략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의 100%이하 투자

단,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70%이상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아래의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은 중요 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한 것으로 자세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등에 대한 내용은 각각 모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현대그룹플러스"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추구

- 지배구조 변화 및 주주환원 정책 확대의 수혜기업에 대한 비중확대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 기업에 대한 비중확대
- 주 투자대상인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에 90% 이상을 투자

* "현대그룹플러스주식"이란 다음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단, 추후 각 계열의 변동 혹은 계열내 신규 편입되는 종목(기존 혹은 신규 종목 등)은 투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룹명	해당 기업명
현대그룹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글로벌비스, HMC투자증권, 현대하이스코, BNG스틸, 현대건설, 현대위아
현대산업개발그룹	현대산업개발, 현대EP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종합상사
현대해상화재그룹	현대해상화재
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 현대H&S, 현대DSF, 현대홈쇼핑, 현대HCN
성우그룹	현대시멘트
한라그룹	한라건설
KCC그룹	KCC, KCC건설
기타	SK하이닉스, 한온시스템(구,한라공조), KB증권(구, 현대증권)

(2) 현대특대한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지속성장이 가능한 장기성장주와 안정적인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건조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KOSPI대비 초과수익 추구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Top-down(하향식)과 Bottom-up(상향식)의 리서치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구성
- 포트폴리오는 업종대표 핵심종목군 70%이상과 전략종목군 30%이하를 통해 안정적 초과성과 창출
-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장기성장주를 발굴하여 장기투자자 의미있는 초과성과 추구

(3) 현대강소기업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국내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 60% 이상 투자합니다.
단,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합니다.
- 핵심우량 강소기업 : 이익모멘텀과 구조적 성장의 가시성이 높은 강소기업에의 집중 투자
- 국면별 대형주 편입 : 경기국면별, 위험선호도 등의 변화에 맞춰 대형 핵심우량주 편입비 조절
- 선별적 자산 배분 : 중기적 변화 포착시 선별적 주식 편입비 조절
- 비교지수: [(KOSPI × 90%) + (CD금리 × 10%)]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이내	1.50%	0.78%	1.59%	1.5055	248	394	537	817	1,4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2.22%	1.50%	1.70%	2.2246	223	440	653	1,065	2,016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7%이내	1.32%	0.60%	1.22%	1.3255	201	330	458	707	1,3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72%	1.00%	1.36%	1.7255	173	342	509	834	1,599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채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A형과 종류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Ae형과 종류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1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동종유형 : 국내 주식형, 2022.09.30 기준).

주5) 이 투자신탁의 종류C형 경우 CDSC(보수채감형)펀드로 총보수 및 1,000만원투자 예시는 **1년차로 표시하였으며**, 체차 총보수율은 C2(2.076%) → C3(1.945%) → C4(1.827%) → C5(1.72%) 입니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1.10.12 ~ 22.10.11	20.10.12 ~ 22.10.11	19.10.12 ~ 22.10.11	17.10.12 ~ 22.10.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14.32	7.98	7.48	-1.41	1.88
비교지수	-	-23.35	-3.60	2.44	-1.75	2.30
수익률 변동성	-	14.98	21.22	25.73	22.56	19.26

주1) 비교지수: [(KOSPI × 90%) + (CD금리 × 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기타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자 : 2022.10.11

성명	생년	직위	운영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운영 경력년수
----	----	----	------	-------------------------	---------

	연도	책임운용	집합 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동근	1983	책임운용	8	436	-12.38	10.39	-11.11	11.96	6년 7개월	
<p>■ 이 투자신탁은 부책임운용인력을 지정하지 않습니다.</p> <p>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공동운용)가 담당합니다.</p> <p>주2)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p> <p>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p>주6)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p>										
투자자 유의사항	<p>■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p> <p>■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은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한정된 투자대상, 산업섹터, 업종 또는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 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15시 30분 이전	제2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방법	15시 30분 이전	제2영업일 기준가로 제4영업일 대금 지급					
	15시 30분 경과후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		15시 30분 경과후	제3영업일 기준가로 제4영업일 대금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hyundai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과세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과세	<p>■ 연금저축계좌의 세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 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 (연금 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 수령시)에 대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p> <p>※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전환 절차 및 방법	<p>■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종류C에 최초 가입한 후 1년 단위로 C2 → C3 → C4 → C5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p> <p>※ 수익증권의 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집합투자업자	현대자산운용주식회사 (☎ 02-2090-0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hyundaiam.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1조좌
효력발생일	2022년 10월 27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yundai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 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 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채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등(F)	집합투자기구
	고액(I) 랩(W)	납입금액이 30 억 이상 투자자가 가입하는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좌의 자산으로 동 펀드에 가입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yundai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yundai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yundaiam.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펀드코드: 15869)

집합투자기구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15870
A-e (수수료선취-온라인)	27333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BP540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5871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5872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5873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5874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26834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15875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15878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15876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A923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A924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A0167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BZ882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15877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A0763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CA92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 예정금액 : 1조좌

이 투자신탁은 1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하며, 모집예정금액 및 모집기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hyundai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펀드코드: 15869)

집합투자기구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15870
A-e (수수료선취-온라인)	27333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BP540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5871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5872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5873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5874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26834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15875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15878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15876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A923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A924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A0167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BZ882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15877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A0763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CA92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9.09.14	최초설정
2009.09.16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2010.05.03	판매보수 인하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2010.05.07	종류(클래스) A-e 추가
2010.11.03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2011.01.27	종류(클래스) C-p 추가
2011.12.28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2012.12.21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법령개정사항 반영 및 '기업공시서식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2013.10.11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법령개정사항 반영 및 '기업공시서식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2014.02.27	종류(클래스) S 추가 및 법령개정사항 반영
2014.11.11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내용 반영
2015.06.24	법령 개정사항 반영, FATCA 관련 유의사항 추가, 집합투자업자 사옥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투자신탁 일부해지시 보수 인출 추가
2015.11.13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2016.07.02	투자위험등급 분류 체계 개편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내용 반영
2016.07.30	국내 증권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판매·환매 기준시간 변경

2016.12.20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법령개정사항 반영
2017.04.29	종류AG 추가
2017.11.14	종류C-pe 추가 및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기준 투자위험등급 변경(3등급 → 2등급)
2018.06.11	펀드명 변경(변경 전 :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변경 후 :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및 투자전략 보완 책임운용인력(정두선→김경운), 부책임운용인력(이강국→이동근) 변경 종류(클래스) 신설 : 종류C-P, 종류C-Pe, 종류S-P 퇴직연금 클래스 명칭변경 : 종류C-P2, 종류C-P2e 및 판매보수인하 환매수수료 삭제
2018.12.19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기준 투자위험등급 변경(2등급 → 3등급)
2019.01.17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전환 및 관련 기재사항 변경, 모집합투자기구 추가 - 펀드명 변경(변경 전 :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변경 후 :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019.02.01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지급 조항 추가
2019.05.22	책임운용인력 변경(김경운→이동근) 및 부책임운용인력 삭제
2019.09.04	기업공시서식 개정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개편 및 한글클래스 명칭 부여
2019.11.01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기준 투자위험등급 변경(3등급→2등급)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
2019.11.27	모펀드 투자전략(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주) 추가
2020.10.30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해지로 인한 모투자신탁 삭제 집합투자업자 본사 이전에 의한 주소 변경
2020.11.13	집합투자규약 첨부 정정
2021.10.08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자본시장법 시행령 ·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반영(연금계좌세액공제 관련)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2등급→1등급) 이익분배 관한 사항 변경(평가/매매이익 유보 변경)
2022.10.27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현대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여의도동), 전경련회관 38층 (대표전화 : 02-2090-05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2.10.11 기준)

가. 운용전문인력

(단위 : 개, 억원, %)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 투자기구 수 (개)	운용 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동근	1983	책임운용 전문인력	8	436	-12.38	10.39	-11.11	11.96	* 운용경력 : 6년 7개월 - 2018.02~현재 : 현대자산운용 주식운용 - 2016.02~2018.02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국내주식운용팀 - 2009.01~2015.12 : 로버스트투자자문 주식리서치

■ 이 투자신탁은 부책임운용인력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공동운용)가 담당합니다.
- 주2)'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3)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4)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5)'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주6)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구 분	구 분	운 용 기 간
책임운용전문인력	정두선	2009.09.14 ~ 2018.06.10
	김경윤	2018.06.11 ~ 2019.05.21
	이동근	2019.05.22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이강국	2012.12.21 ~ 2018.06.14
	이동근	2018.06.11 ~ 2019.05.21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펀드코드	내용
종류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15870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27333	온라인(On-Line) 판매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C	15871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종류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5872	종류C에 최초 가입한 투자자는 1년 단위로 C2 → C3 → C4 → C5 로 전환됨(전환일 당일 기준가격)
종류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5873	
종류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5874	
종류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26834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15875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15876	납입금액이 30억 이상 투자자가 가입하는 수익증권
종류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15878	집합투자기구
종류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15877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좌의 자산으로 동 펀드에 가입하는 수익증권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A016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종류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A0763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BP540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BZ88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온라인판매 전용 수익증권
종류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CA922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 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A923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A924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투자자 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주식 90% 이상(현대그룹플러스 90%이상), 채권 40%이하
투자목적	“현대그룹플러스”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 추구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대상 종목의 매출 및 수익성장 등 감안하여 편입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 - 지배구조 변화 및 주주환원 정책 확대의 수혜기업에 대한 비중확대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 기업에 대한 비중확대 - 주 투자대상인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에 90% 이상을 투자
▶ 현대튼튼대한민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주식 60%이상, 채권 40%이하
투자목적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적정 위험을 부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 수익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지속성장이 가능한 장기성장주와 안정적인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견조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KOSPI대비 초과수익 추구 Top-down(하향식)과 Bottom-up(상향식)의 리서치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는 업종대표 핵심종목군 70%이상과 전략종목군 30%이하를 통해 안정적 초과성과 창출 -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장기성장주를 발굴하여 장기투자로 의미있는 초과성과 추구
▶ 현대강소기업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주식 60%이상(중소형주 60% 이상), 채권 40%이하
투자목적	철저한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중소형주 중에서 국내외 경쟁력을 갖춰 안정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강소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시장대비 초과 수익 창출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우량 강소기업 : 이익모멘텀과 구조적 성장의 가시성이 높은 강소기업에의 집중 투자 - 국면별 대형주 편입 : 경기국면별, 위험선호도 등의 변화에 맞춰 대형 핵심우량주 편입비 조절 - 선별적 자산 배분 : 중기적 변화 포착시 선별적 주식 편입비 조절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100%이하 (단,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모투자신탁에 70% 이상 투자)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
현대튼튼대한민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현대튼튼대한민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

현대강소기업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현대강소기업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
기타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10%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4)호 및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개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투자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설명
①	주식	90%이상 (단, 현대그룹플러스 주식: 90% 이상)	<p>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 (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 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함)</p>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가 발행한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이하 “현대그룹플러스주식”라 한다)</p> <p>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현대, 현대자동차, 현대산업개발,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하이닉스, 현대건설</p> <p>나. 현대해상화재그룹, 성우그룹, 한라그룹, KCC그룹, 현대상사</p>
②	채권	40% 이하	<p>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은 제외)</p>
③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p>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p>
④	어음	40% 이하	<p>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p>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함)	
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금리스왵 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 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⑥	집합투자증권등	30%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는 30% 까지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 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⑦	환매조건부매수	4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	
⑧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	
⑨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 of 대여	
⑩	증권의 차입	20% 이하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	
⑪	신탁업자와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⑫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에의 예치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에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4) 및 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 4)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에서 열거한 ① 내지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상기 ② 및 ④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현대뉴현대대한민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설명
①	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9조 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 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함)
②	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은 제외)	
③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	
④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함)	
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 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금리스왑 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⑥	집합투자증권등	40% 미만 단,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는 30% 까지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 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 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⑦	환매조건부매수	10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	
⑧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	
⑨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에 대여	
⑩	증권의 차입	20% 이하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	
⑪	신탁업자와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⑫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에의 예치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에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4) 및 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에서 열거한 ① 내지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상기 ② 및 ④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현대강소기업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설명	
①	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9조 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 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함)	
		중소형주 60% 이상	단,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이하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함.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 포함)의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의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이 경우 시가총액 순위는 매 분기말 산정.	
②	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 화회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은 제외)	
③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	
④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함)	
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 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⑥	집합투자증권등	40% 미만 단,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는 30% 까지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 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 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⑦	환매조건부매수	10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	
⑧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	
⑨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 대여	
⑩	증권의 차입	20% 이하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	

⑪	신탁업자와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⑫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에의 예치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에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4) 및 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에서 열거한 ① 내지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상기 ② 및 ④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2)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 모투자신탁 투자 제한

▶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본문만 해당)

<p>동일종목 투자 예외</p>	<p>다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사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p>파생상품 매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2)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집합투자 증권에의 투자</p>	<p>이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2)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실권주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실권주에 투자하는 행위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현대트러스트대한민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3)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본문만 해당)
동일종목 투자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p>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 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p>파생상품 매매</p>	<p>1)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2)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집합투자 증권에의 투자</p>	<p>이 투자신탁채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3)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4)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5) 이 투자신탁채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p> <p>6)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이해관계인과의 거래</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2)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p>	
<p>후순위채 투자</p>	<p>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p>한도초과</p>	<p>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계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 현대강소기업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p>동일종목 투자</p>	<p>이 투자신탁 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p> <p>2)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본문만 해당)</p>
<p>동일종목 투자 예외</p>	<p>다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 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p>	

	<p>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p>파생상품 매매</p>	<p>1)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2)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집합투자 증권에의 투자</p>	<p>이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3)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4)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5)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p> <p>6)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이해관계인과의 거래</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 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2)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p>	
<p>후순위채 투자</p>	<p>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 에 투자하는 행위</p>	
<p>한도초과</p>	<p>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2) 집합투자업자는 (1)항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2)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3)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4)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 단기대출을 제외)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5)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의 신탁재산 100% 이하 투자
단,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70% 이상

(2) 세부 운용전략

-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대상	투자비율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100% 이하
현대튼튼대한민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	
현대강소기업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모신탁에의 투자비율은 가격변동으로 인한 편입비율 조정 이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로 투자비율을 조정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KOSPI × 90%) + (CD금리 × 10%)]

주)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 상기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기본운용전략

- “현대그룹플러스”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2) 세부운용전략

■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투자대상 종목의 매출 및 수익성장 등 감안하여 편입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
- 지배구조 변화 및 주주환원 정책 확대의 수혜기업에 대한 비중확대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 기업에 대한 비중확대
- 주 투자대상인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에 90% 이상을 투자
- 기타 투자대상인 구조적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유관기업들은 40% 이내 투자

■ 초과수익 추구 전략

- 산업내 핵심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및 업종 대비 초과성장하는 구조적 성장주 발굴 투자
- 현대그룹플러스 협력업체 등으로서 경쟁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 발굴 투자

■ 위험 관리 전략

- 필요시 주가지수선물 매도헤지 또는 주식 투자비중 조절로 시장위험 관리
- 현대그룹플러스 관련주의 특성상 구조적 수요위축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산업의 비중 축소

■ 현대그룹플러스 기업의 주요내용

계열명	해당기업명	내용
현대계열	현대엘리베이터	- 국내1위 승강기전문업체, 세계 TOP 5위 목표 (시장점유율10% → 15%)
	현대상선	- 국내 최대 탱커사업부문 영위, 다양한 운영선종 보유
현대자동차 계열	현대자동차(기아차)	-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재편, 미국과 중국시장 점유율 확대로 글로벌선두업체로 도약
	현대모비스	- 현대차/기아차의 글로벌 성장과 함께 지난 9년간 영업이익이 지속성장, 자동차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성장기대
	현대제철	- 10년 본격적인 고로가동으로 매출성장 및 시장지배력 확대로 기업가치 Level-up
	글로벌비스	- 현대차그룹의 3대 물류사업확보(CKD, 완성차운송, 현대제철 원료운반 사업)로 고속성장을 보장
	현대하이스코	- 현대차그룹내 자동차용 냉연강판 공급업체
	BNG 스틸	-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업체로 조선, 자동차, 건설 등에 사용되는 스테인레스강판 공급업체
	HMC 투자증권	- 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IB 분야 신규 진출
	현대건설	- 공공부문 1위. 토목, 플랜트 분야 최고 경쟁력 보유
	현대위아	- 현대차그룹내 기계 및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현대산업개발 계열	현대산업개발	- 국내 주택자체사업에 주력하며 업계 최고의 주택사업 경쟁력 확보
	현대 EP	- 현대차, 기아차 등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용 기능성 소재 공급업체
현대중공업 계열	현대중공업	- 글로벌 1위 조선소로서 전선종에 걸쳐 경쟁력 확보
	현대미포조선	- PC 선 건조 선두업체로서 업계 최고의 수익성 보유
	현대상사	- 종합상사업체로 자원개발 및 조선업 자회사 보유
현대해상화재	현대해상화재	- 자동차보험의 장점을 바탕으로 경쟁우위 확보
현대백화점 계열	현대백화점	- 프리미엄급 백화점으로 신규점 출점 통한 성장기대
	현대 H&S	- 우수한 자산가치 보유한 대표적 가치주
	현대 DSF	- 울산지역의 안정적 소비 기반으로 꾸준한 실적기대
	현대홈쇼핑	- 국내 3대 홈쇼핑 업체의 하나로 향후 해외진출 성장정책 수혜 기대
	현대 HCN	- 현대백화점 그룹내 MSO
성우계열	현대시멘트	- 시멘트 제조 회사로 리조트 등 레저사업 진출
한라계열	한라건설	- 토목중심의 안정된 영업성과 자산가치 강점
	만도	- 자동차용 부품 특히 안정장치 관련 부품에서 글로벌 업체로 부상중
KCC 계열	KCC	- 건설재 국내 1위 시장지배력, 높은 투자자산 가치
	KCC 건설	- 그룹, 관급수주 중심의 안정적 성장성 확보
기타	SK 하이닉스	- DRAM 부문 생산 및 기술부문 선도업체
	한라공조	- 자동차 공조분야 국내 1위

현대증권	- Retail에 강점을 보유한 종합증권사
기타	- 현대엠코(상장추진중)

■ 비교지수 : [(KOSPI × 90%) + (CD금리 × 10%)]

주) 이 투자신탁은 현대그룹플러스와 관련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일반 주식 시장과 상이한 수익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펀드입니다. 이에 따라 KOSPI 를 이 투자신탁의 시장 대비 성과 참고를 위한 단순 참조지수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현대트론대한민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기본 운용전략

■ 지속성장이 가능한 장기성장주와 안정적인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견조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KOSPI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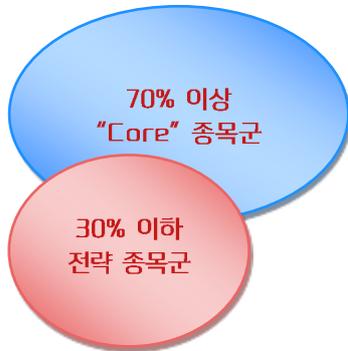
(2) 세부 운용전략

■ 포트폴리오 운용전략

- 1) 기본포트폴리오 : Top-down(하향식)과 Bottom-up(상향식)의 리서치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구성
- 2) 자산배분 : 시장위험과 관련된 체계적 위험발생시 적극적 자산배분전략(선물헷지 전략 병행)
- 3) 섹터배분 : 경기상황과 업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섹터비중조절을 통해 초과수익 기회 포착
- 4) 종목선택 : 업종대표주와 전략종목군(시장주도주, 저평가주)으로 초과수익 추구

■ 세부 운용전략

- 1) 포트폴리오는 업종대표 핵심종목군 70%이상과 전략종목군 30%이하를 통해 안정적 초과성과 창출



◆ Core(핵심) 종목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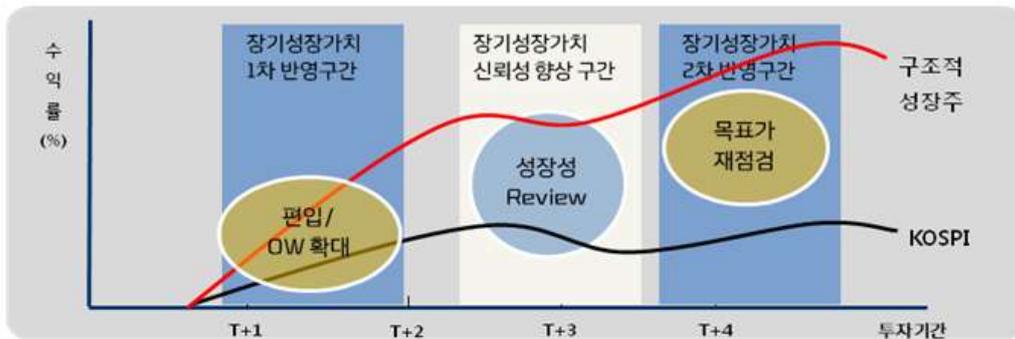
- 업종 대표 핵심 우량주로 중장기 투자용
- 투자비중은 70% 이상
- 펀드의 안정성을 목표로 구성

◆ 전략 종목군

- 유망 우량주로서 시장 주도주 및 테마주에 중·단기 매매이익 확보를 위해 투자
- 투자비중은 30% 이하
- 펀드의 초과 수익을 목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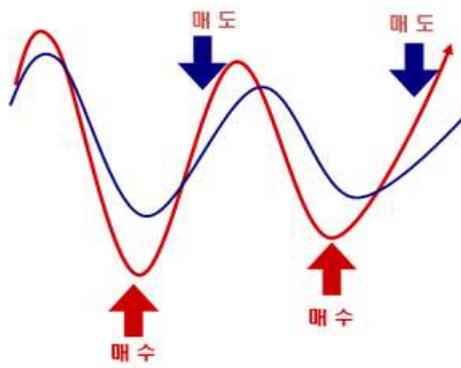
- 2)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장기성장주를 발굴하여 장기투자로 의미있는 초과성과 추구

* 장기성장주 : 매출액, 이익성장률이 시장 및 업종보다 높은 기업



- 3) 시장의 비효율적 변동성을 활용한 Bottom Fishing(바텀 피싱)을 통해 초과수익 확대

*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및 비이성적 급락 종목 투자 : 단기초과수익 기대



상황	- 비이성적 시장 급락시 - 근거없는 루머 발생으로 급락시 - 기업 내재가치 대비 하락폭 과도시
전체	- 해당 업종/종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 - 밸류에이션(Valuation) 및 기술적 지표, 수급동향 체크 병행
적용	- 가급적 대형주에 적용 - 가급적 보유종목에 적용 → 밸류에이션(Valuation)과 이익흐름 익숙 - Bargain Hunting(바겐헌팅) → 단기 초과 수익 창출

- * Top-down(하향식) : 개별주식 보다는 전체적인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자산배분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 예를들면 거시적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산업, 국가의 주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 자산을 배분함.
- * Bottom-up(상향식) : 개별 주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특정한 경제상황, 경제 사이클 보다는 기업 자체의 전망을 가지고 주식이 선택되는 방법
- * Bottom Fishing(바텀 피싱) : 최저가 노리기
- * Bargain Hunting(바겐헌팅) : 일종의 저가매수 전략. 기업가치와 주가 간의 격차가 큰 주식을 찾아 사들이는 고수익·고위험 투자전략

■ 비교지수: [(KOSPI × 90%) + (CD 금리 × 10%)]

주)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 상기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현대강소기업증권모투자신탁[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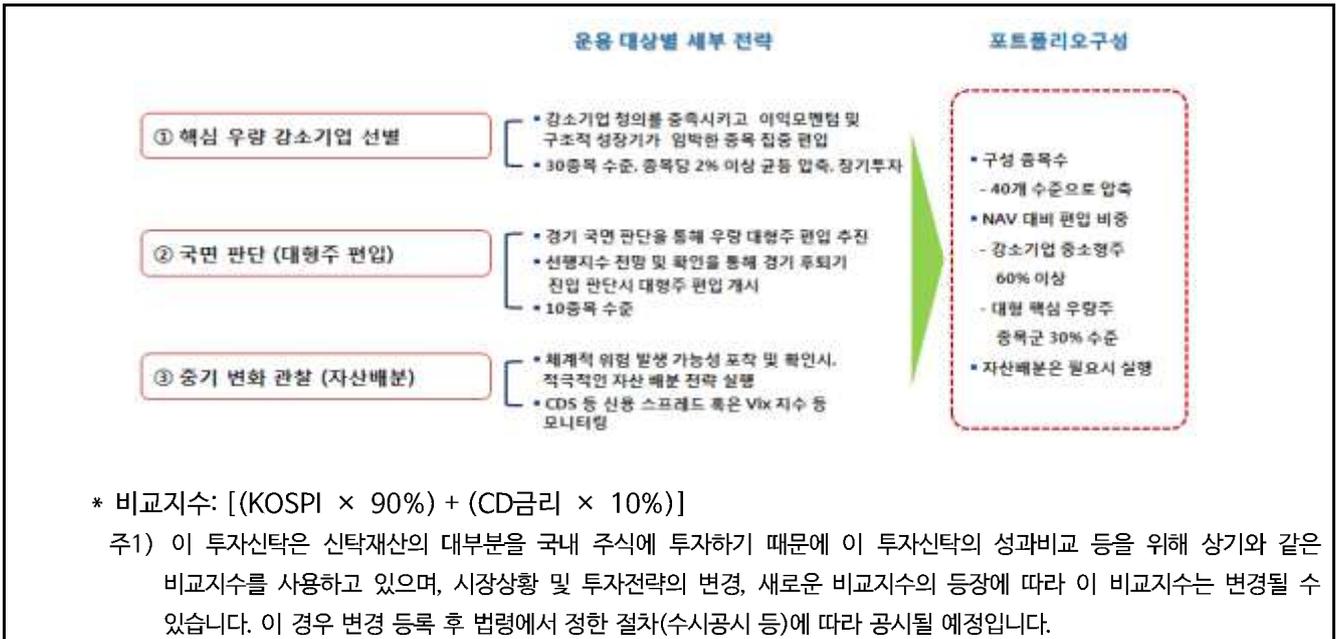
(1) 운용목표

철저한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중소형주 중에서 국내외 경쟁력을 갖춰 안정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강소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시장대비 초과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 ※ 중소형주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 포함)의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의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단, 시가총액 순위는 매 분기말 산정됩니다.
- ※ 강소기업
규모는 작지만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세계시장 5위권 내에 해당하는 우량 중소기업을 의미.

(2) 운용전략

- 투자대상기업
 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형 기업
 2. 대기업과 강력한 Supply Chain(공급망)으로 동반 성장하는 기업
 3. 고객다변화를 통한 지속 성장이 가능한 핵심기업
 4. 대기업보다 높은 성장률과 수익성의 확보 가능한 기업
 5. 신성장 및 신수출산업 관련 강소기업
- 운용전략
 1. 핵심우량 강소기업 : 이익모멘텀과 구조적 성장의 가시성이 높은 강소기업에의 집중 투자
 2. 국면별 대형주 편입 : 경기국면별, 위험선호도 등의 변화에 맞춰 대형 핵심우량주 편입비 조절
 3. 선별적 자산 배분 : 중기적 변화 포착시 선별적 주식 편입비 조절
- 세부전략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현대그룹플러스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므로 주식시장의 변동 및 주가 등락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일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투자적격등급(A-)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나. 특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은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한정된 투자대상, 산업섹터, 업종 또는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 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실무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계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25.41%임을 감안하여 6 등급 중 1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나, 혼합형 투자기구 등 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향후 주식시장의 전망을 좋게 보고, 등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상당하는 수익을 실현하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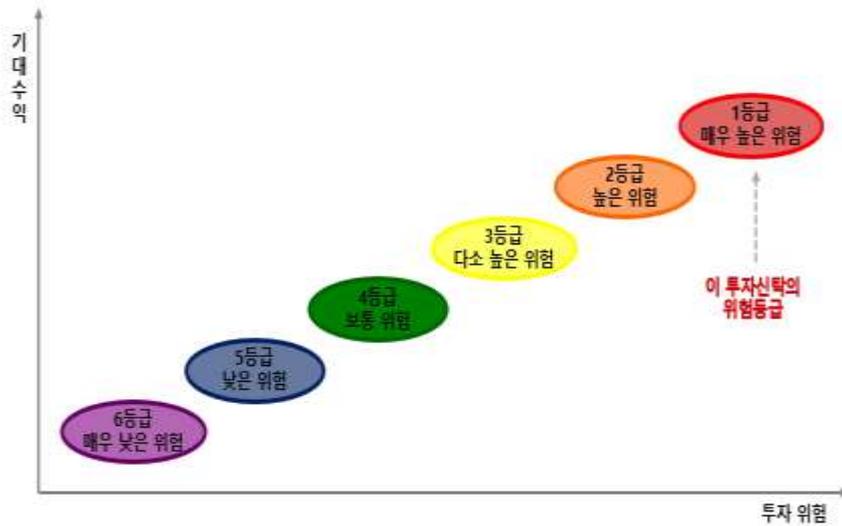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므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이란?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를 말합니다.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입니다. 수익률 변동성 값이 클수록 투자신탁의 위험은 커집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구간

위험등급	1 (매우높은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높은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낮은위험)
수익률 변동성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 이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 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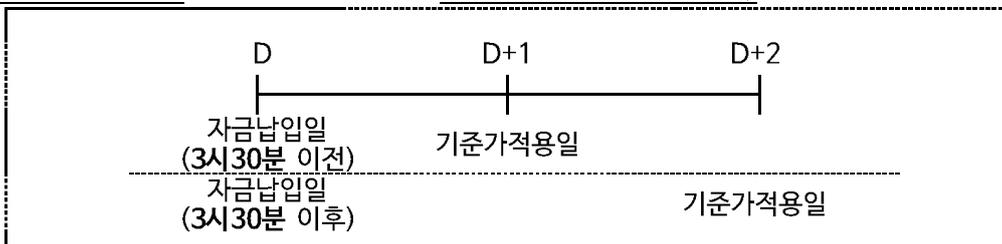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온라인(On-Line)판매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종류C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수익자가 전환되어 보유하는 수익증권
종류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종류C2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수익자가 전환되어 보유하는 수익증권
종류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종류C3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수익자가 전환되어 보유하는 수익증권
종류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종류C4 수익증권을 1년이상 보유한 수익자가 전환되어 보유하는 수익증권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온라인(On-Line)판매 전용 수익증권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납입금액이 30억 이상 투자자가 가입하는 수익증권

종류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집합투자기구
종류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좌용 수익증권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종류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온라인판매 전용 수익증권
종류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투자자 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가입제한 :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중 현대그룹에 소속된 계열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3시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2) 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3)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2)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2) 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4) **환매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 전전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 하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 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 사유

-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 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종류C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종류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신탁계약서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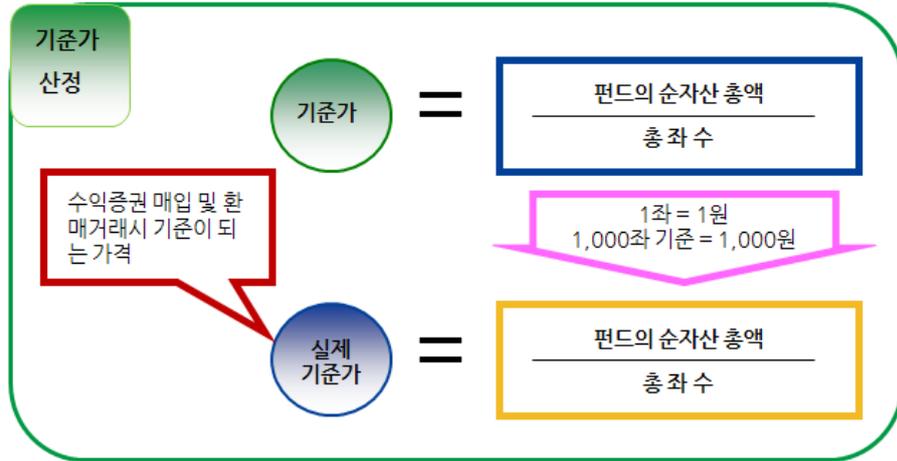
- 상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http://www.hyundaiam.com)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 판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최종시가 없는 상장채권을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종류/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음	납입금액의 1% 이내	-	-	-
A-e (수수료선취-온라인)	온라인 전용	납입금액의 0.7% 이내	-	-	-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	가입제한 없음	-	-	-	-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	종류C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	-	-	-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	종류C2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	-	-	-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	종류C3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	-	-	-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	종류C4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	-	-	-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온라인 전용	-	-	-	-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납입금액 30억이상 투자자용	-	-	-	-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펀드등)	집합투자기구	-	-	-	-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판매회사의 Wrap 계좌용	-	-	-	-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	-	-	-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 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 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 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전용	납입금액의 0.85% 이내	-	-	-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온라인 판매 전용 수익증권	-	-	-	-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며,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 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 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가입한 투자자전용	-	-	-	-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 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가입한 투자자전용	-	-	-	-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	-	-	-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투자자 전용				
부과기준	-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

주1)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회사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비 용	동종 유형 총보수	합성 총 보수·비용 (피투자집합 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 비용
종류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0.67	0.78	0.03	0.02	1.50	0.0055	1.5055	1.37	1.5076	0.4419
종류A-e (수수료선취- 온라인)	0.67	0.60	0.03	0.02	1.32	0.0055	1.3255	1.01	1.3276	0.4449
종류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0.67	1.50	0.03	0.02	2.22	0.0046	2.2246	1.59	2.2268	0.4246
종류C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0.67	1.356	0.03	0.02	2.076	0.0064	2.0824	-	2.0840	0.4763
종류C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0.67	1.225	0.03	0.02	1.945	0.0000	1.9450	-	1.9455	0.0379
종류C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0.67	1.107	0.03	0.02	1.827	0.0028	1.8298	-	1.8320	0.4022
종류C5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0.67	1.00	0.03	0.02	1.72	0.0054	1.7254	-	1.7276	0.4388
종류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0.67	1.00	0.03	0.02	1.72	0.0055	1.7255	1.18	1.7276	0.4420
종류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	0.67	0.50	0.03	0.02	1.22	-	1.22	-	1.22	-
종류C-f	0.67	0.50	0.03	0.02	0.77	-	0.77	-	0.7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종류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0.67	0.00	0.03	0.02	0.72	-	0.72	-	0.72	-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0.67	0.76	0.03	0.02	1.48	-	1.48	-	1.48	-
종류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0.67	0.35	0.03	0.02	1.07	0.0049	1.0749	-	1.0773	0.4362
종류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67	0.69	0.03	0.02	1.41	-	1.41	-	1.41	-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0.67	0.38	0.03	0.02	1.10	-	1.10	-	1.10	-
종류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0.67	0.24	0.03	0.02	0.96	0.0052	0.9652	-	0.9674	0.4482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0.67	0.80	0.03	0.02	1.52	0.0028	1.5228	-	1.5250	0.4427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0.67	0.40	0.03	0.02	1.12	0.0028	1.1228	-	1.1252	0.4323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 직전 회계연도 : 2021.09.14 ~ 2022.09.13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173,213

- 주3)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금융비용	-

- 주4)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5)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이 다른 집합투자기구(모투자신탁 포함)에 투자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6)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 합니다. (동종유형 : 국내 주식형, 2022.09.30 기준)

※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투자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종류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8	393	537	816	1,48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48	394	537	817	1,481
종류 A-e (수수료선취-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1	330	458	707	1,30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01	330	458	707	1,303
종류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3	440	653	1,064	2,01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23	440	653	1,065	2,016
종류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8	411	610	996	1,89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08	411	610	996	1,893
종류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5	386	573	937	1,78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95	386	573	937	1,786
종류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3	363	539	883	1,68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83	363	540	883	1,688
종류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3	342	509	833	1,59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73	342	509	834	1,598
종류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3	342	509	834	1,59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73	342	509	834	1,599
종류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2	243	362	595	1,15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2	243	362	595	1,155
종류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7	153	229	379	74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7	153	229	379	744

종류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2	143	214	355	69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2	143	214	355	697
종류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8	294	437	718	1,38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48	294	437	718	1,385
종류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2	229	319	526	1,02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2	229	319	527	1,025
종류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4	361	495	759	1,38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24	361	495	759	1,387
종류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0	219	326	538	1,04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0	219	326	538	1,047
종류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6	192	287	473	92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7	192	287	473	924
종류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2	302	450	739	1,42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52	303	450	739	1,424
종류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2	224	334	550	1,07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2	224	334	550	1,070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실제 판매수수료율 수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별 자동전환 순서 및 판매보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C→C2→C3→C4→C5 (당해 종류 수익증권 최초매수일로부터 매1년 경과시)

수익증권	C	C2	C3	C4	C5
판매보수율(연간, %)	1.50	1.356	1.225	1.107	1.0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수익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 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21년 10월 08일 이후 매년 결산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 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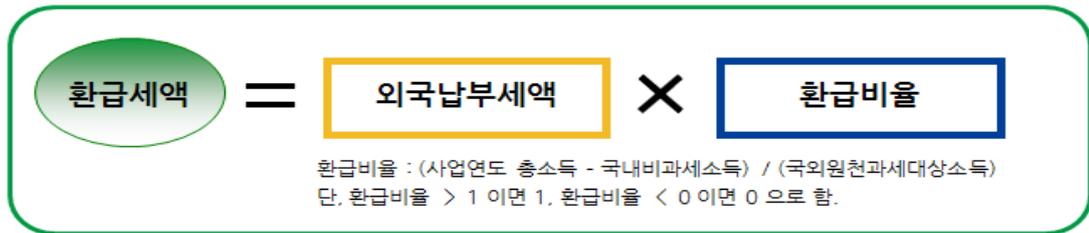
-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외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8%, 지방소득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2014.1.1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 -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2020.1.1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 59조의 3 제 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 14조제 3항제 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기 세액공제(「소득세법」 제 59조의 3)를 적용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 금액을 한도로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2020.1.1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2015.1.1 부터)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3.2%. - 다만, 종합소득금액 4 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 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 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6.5% - 다만, 종합소득금액 1 억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 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 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3.2%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기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를 적용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900만원 금액을 한도로 적용하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2020.1.1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과세체계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연금 소개 (http://www.moel.go.kr/pension)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 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3기(2021.09.14 - 2022.09.13)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 12기(2020.09.14 - 2021.09.13)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 11기(2019.09.14 - 2020.09.13)	-	해당없음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3기	제 12기	제 11기
	(2022.09.13)	(2021.09.13)	(2020.09.13)
운용자산	38,578,142,320	42,227,137,052	26,113,156,424
증권	36,641,824,442	39,026,719,978	25,650,719,96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936,317,878	3,200,417,074	462,436,462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2,390,094	71,077,863	97,579,962
자산총계	38,610,532,414	42,298,214,915	26,210,736,386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6,986,139	59,931,660	81,283,734
부채총계	26,986,139	59,931,660	81,283,734
원본	40,788,208,163	37,124,573,927	34,925,557,224
수익조정금	30,597,844	265,709,830	110,470,726
이익잉여금	-2,235,259,732	4,847,999,498	-8,906,575,298
자본총계	38,583,546,275	42,238,283,255	26,129,452,652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3기	제 12기	제 11기
	(2021.09.14 - 2022.09.13)	(2020.09.14 - 2021.09.13)	(2019.09.14 - 2020.09.13)
운용수익	-2,234,159,732	14,199,033,015	175,733,726
이자수익	20,420,542	4,570,483	2,416,039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2,254,580,274	14,194,462,532	173,317,687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100,000	1,100,000	15,933
당기순이익	-2,235,259,732	14,197,933,015	175,717,793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가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가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제13기(2022.09.13)		제12기(2021.09.13)		제11기(2020.09.13)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936,317,878		3,200,417,074		462,436,462
1. 현금및현금성자산	1,936,317,878		3,200,417,074		462,436,462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36,641,824,442		39,026,719,978		25,650,719,962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36,641,824,442		39,026,719,978		25,650,719,962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32,390,094		71,077,863		97,579,962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1,326,727		479,871		39,481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31,063,367		70,597,992		97,540,481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38,610,532,414		42,298,214,915		26,210,736,386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26,986,139		59,931,660		81,283,734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25,886,139		58,831,660		81,283,734	
4. 수수료미지급금	1,100,000		1,100,000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26,986,139		59,931,660		81,283,734
자 본						
1. 원 본	40,788,208,163		37,124,573,927		34,925,557,224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2,204,661,888		5,113,709,328		-8,796,104,572	
(발행좌수 당기: 40,788,208,163 좌 전기: 37,124,573,927 좌 전전기: 34,925,557,224 좌) (기준가격 당기: 945.95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748.15 원)						
이익잉여금	-2,235,259,732		4,847,999,498		-8,906,575,298	
수익조정금	30,597,844		265,709,830		110,470,726	
자 본 총 계		38,583,546,275		42,238,283,255		26,129,452,652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8,610,532,414		42,298,214,915		26,210,736,386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13기(2021.09.14-2022.09.13)		제12기(2020.09.14-2021.09.13)		제11기(2019.09.14-2020.09.13)	
	금 액		금 액		금 액	
문 용 수 익						
1. 투자수익		20,420,542		4,570,483		2,416,039
1. 이 자 수 익	20,420,542		4,570,483		2,416,039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645,050,875		14,630,043,375		2,627,782,050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645,050,875		14,630,043,375		2,627,782,05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899,631,149		435,580,843		2,454,464,363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1,337,579,788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1,562,051,361		435,580,843		2,454,464,363	
문 용 비 용		1,100,000		1,100,000		15,933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100,000		1,100,000		15,933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235,259,732		14,197,933,015		175,717,793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54801616		0.382440295		0.00503120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억좌, 억원]

Class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A	2021.09.14 - 2022.09.13	191	191	26	25	20	19	196	183
	2020.09.14 - 2021.09.13	214	146	168	166	192	188	191	195
	2019.09.14 - 2020.09.13	235	161	9	5	30	19	214	146
C	2021.09.14 - 2022.09.13	8	8	4	3	8	7	4	3
	2020.09.14 - 2021.09.13	4	3	12	11	8	8	8	8
	2019.09.14 - 2020.09.13	4	3	4	2	4	3	4	3
C2	2021.09.14 - 2022.09.13	0	0	7	7	1	1	6	6
	2020.09.14 - 2021.09.13	1	1	0	0	1	1	0	0
	2019.09.14 - 2020.09.13	3	2	2	1	3	2	1	1

C3	2021.09.14 - 2022.09.13	1	1	0	0	1	1	0	0
	2020.09.14 - 2021.09.13	3	2	1	1	3	2	1	1
	2019.09.14 - 2020.09.13	1	1	3	2	1	1	3	2
C4	2021.09.14 - 2022.09.13	1	1	2	2	2	2	1	1
	2020.09.14 - 2021.09.13	1	1	2	2	1	1	1	2
	2019.09.14 - 2020.09.13	0	0	1	0	0	0	1	1
C5	2021.09.14 - 2022.09.13	53	53	5	5	9	8	49	46
	2020.09.14 - 2021.09.13	96	65	3	2	46	44	53	53
	2019.09.14 - 2020.09.13	108	73	2	1	14	9	96	65
C-e	2021.09.14 - 2022.09.13	113	113	42	39	48	46	107	99
	2020.09.14 - 2021.09.13	58	39	234	220	178	170	113	114
	2019.09.14 - 2020.09.13	55	37	27	17	24	15	58	39
C-w	2019.09.14 - 2020.09.13	0	0	0	0	0	0	0	0
A-e	2021.09.14 - 2022.09.13	37	37	22	21	19	18	41	38
	2020.09.14 - 2021.09.13	5	4	70	68	38	38	37	39
	2019.09.14 - 2020.09.13	5	3	4	3	3	2	5	4
S	2021.09.14 - 2022.09.13	4	4	3	3	3	3	4	4
	2020.09.14 - 2021.09.13	1	1	24	21	21	18	4	5
	2019.09.14 - 2020.09.13	1	0	2	1	2	1	1	1
S-P	2021.09.14 - 2022.09.13	2	2	3	3	1	1	3	3
	2020.09.14 - 2021.09.13	0	0	5	6	3	4	2	2
	2019.09.14 - 2020.09.13	0	0	0	0	0	0	0	0
C-P	2021.09.14 - 2022.09.13	1	1	0	0	0	0	1	1
	2020.09.14 - 2021.09.13	0	0	0	1	0	0	1	1
	2019.09.14 - 2020.09.13	0	0	0	0	0	0	0	0
C-Pe	2021.09.14 - 2022.09.13	0	0	2	2	2	2	1	0
	2020.09.14 - 2021.09.13	0	0	2	2	1	2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연평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1.10.12 ~ 22.10.11	20.10.12 ~ 22.10.11	19.10.12 ~ 22.10.11	17.10.12 ~ 22.10.11	09.09.14 ~ 22.10.11
투자신탁(운용)	-12.36	10.39	9.90	0.80	4.09
비교지수	-23.35	-3.60	2.44	-1.75	2.30
수익률변동성(%)	14.98	21.22	25.73	22.56	19.26
종류A(수수료선취-오프라인)	-13.69	8.76	8.26	-0.70	2.57
비교지수	-23.35	-3.60	2.44	-1.75	2.30
수익률변동성(%)	14.98	21.22	25.73	22.56	19.26
종류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4.32	7.98	4.48	-1.41	1.88
비교지수	-23.35	-3.60	2.44	-1.75	2.30
수익률변동성(%)	14.98	21.22	25.73	22.56	19.26
종류C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4.18	-1.85	0.90	-5.02	-1.63
비교지수	-23.35	-26.70	-14.64	-11.94	-2.77
수익률변동성(%)	14.98	21.2	25.73	22.56	19.27
종류C3(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4.37	8.10	7.66	-1.20	-1.07
비교지수	-45.79	-18.93	-8.72	-8.32	-0.98
수익률변동성(%)	14.98	21.22	25.73	22.56	18.96
종류C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3.97	8.42	22.50	6.81	2.04
비교지수	-23.35	-3.60	-0.82	-3.64	0.10
수익률변동성(%)	14.98	21.22	25.73	22.56	18.88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13.88	8.52	8.02	-0.92	2.31
비교지수	-23.35	-3.60	2.44	-1.75	2.30
수익률변동성(%)	14.98	21.22	25.73	22.56	19.26
종류C5(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3.88	8.53	8.02	-0.92	-1.61
비교지수	-23.35	-3.60	2.44	-1.75	1.12
수익률변동성(%)	14.98	21.22	25.73	22.56	19.23
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13.53	8.95	8.45	-0.52	2.22
비교지수	-23.35	-3.60	2.44	-1.75	2.40
수익률변동성(%)	14.98	21.22	25.3	22.56	19.20
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13.31	9.22	8.73	-0.27	-1.00
비교지수	-23.35	-3.60	2.44	-1.75	1.25
수익률변동성(%)	14.98	21.22	25.73	22.56	19.72
종류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13.21	9.34	8.91	-	1.11
비교지수	-23.35	-3.60	2.44	-	-1.37
수익률변동성(%)	14.98	21.22	25.73	-	23.49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13.0	8.75	8.62	-	7.12
비교지수	-23.35	-3.60	0.17	-	-1.58
수익률변동성(%)	14.98	21.22	25.73	-	24.03
종류C-Pe(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13.35	-	-	-	5.34

비교지수	-23.35	-	-	-	-6.64
수익률변동성(%)	14.98	-	-	-	2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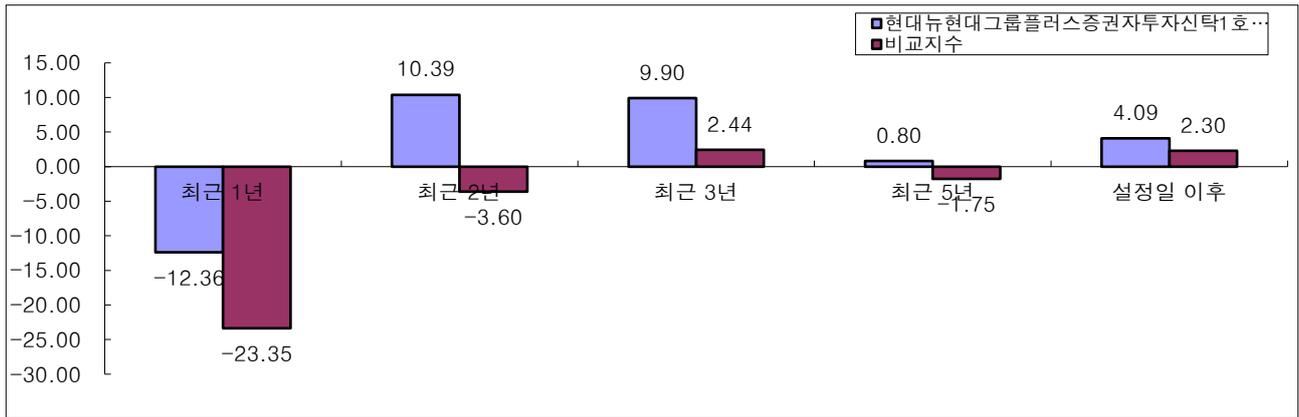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 (0.9 * [KOSPI]) + (0.1 * [CD금리])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 전체(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 전체(운용펀드)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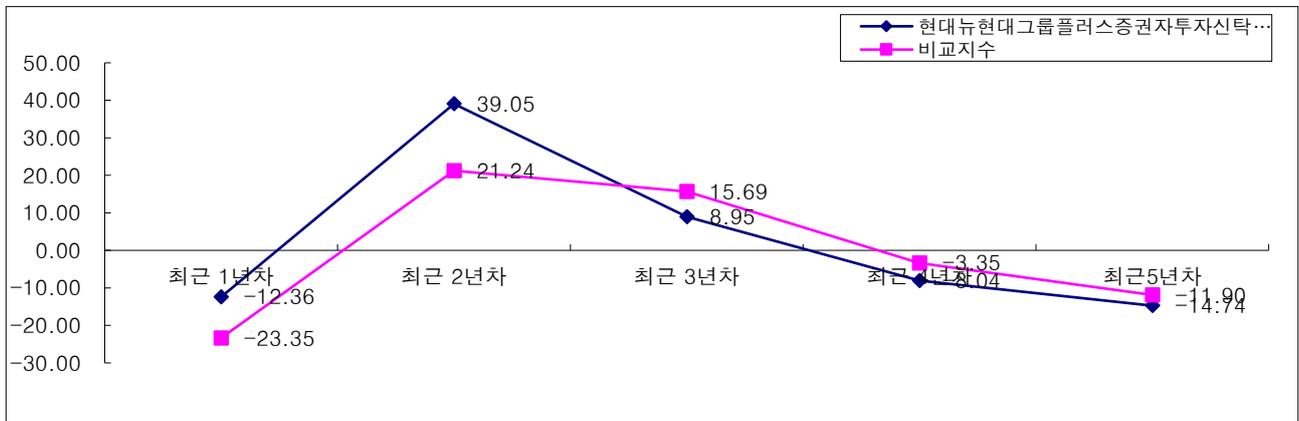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1.10.12 ~ 22.10.11	20.10.12 ~ 21.10.11	19.10.12 ~ 20.10.11	18.10.12 ~ 19.10.11	17.10.12 ~ 18.10.11
종류A(수수료선취-오프라인)	-13.69	37.05	7.28	-9.42	-16.01
비교지수	-23.35	21.24	15.69	-3.35	-11.90
종류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4.32	36.09	6.50	-10.07	-16.61
비교지수	-23.35	21.24	15.69	-3.35	-11.90
종류C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4.18	12.24	6.66	-9.95	-16.47
비교지수	-23.35	-29.90	15.69	-3.35	-11.90
종류C3(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4.37	36.47	6.79	-9.79	-16.37
비교지수	-45.79	21.24	15.69	-3.35	-11.90
종류C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3.97	36.63	56.47	-9.70	-16.28
비교지수	-23.35	21.24	4.99	-3.35	-11.90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13.88	36.75	7.04	-9.63	-16.20
비교지수	-23.35	21.24	15.69	-3.35	-11.90
종류C5(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13.88	36.77	7.03	-9.62	-16.20
비교지수	-23.35	21.24	15.69	-3.35	-11.90
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13.53	37.27	7.48	-9.26	-15.86
비교지수	-23.35	21.24	15.69	-3.35	-11.90
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13.31	37.61	7.78	-9.03	-15.64
비교지수	-23.35	21.24	15.69	-3.35	-11.90
종류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13.21	37.75	8.07	-8.61	-
비교지수	-23.35	21.24	15.69	-3.35	-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13.70	37.04	8.39	0.00	-
비교지수	-23.35	21.24	8.14	-6.07	-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13.35	27.34	-	-	-
비교지수	-23.35	14.54	-	-	-

- 주1) 비교지수 : (0.9 * [KOSPI]) + (0.1 * [CD금리])
-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기간 수익률'을 말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5)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6)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 전체(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 전체(운용펀드)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7)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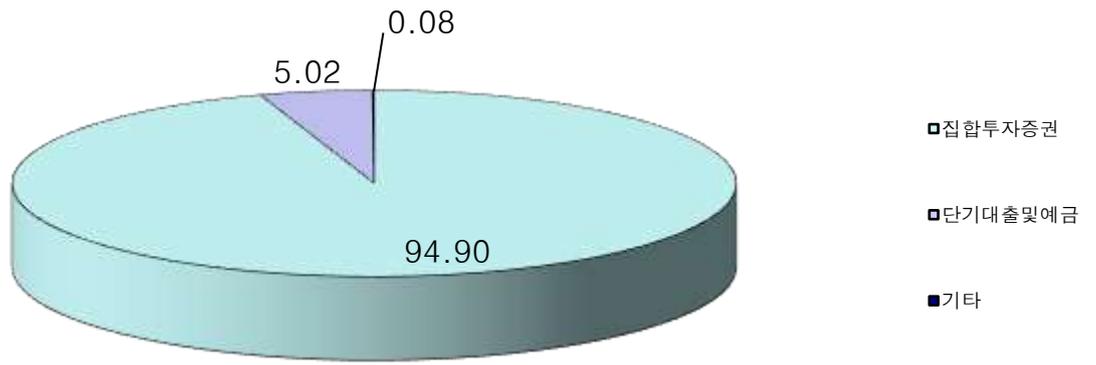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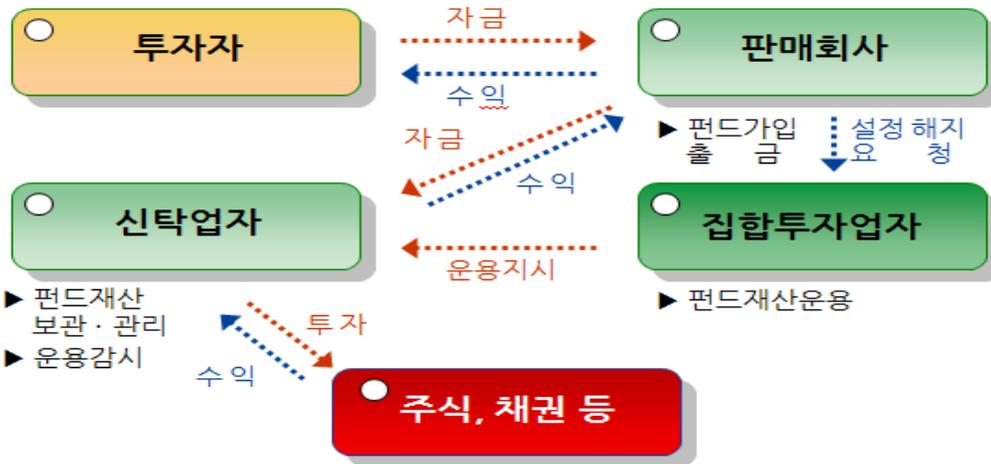
[2022.09.13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366	0	0	0	0	0	19	0	386
	(0.00)	(0.00)	(0.00)	(94.90)	(0.00)	(0.00)	(0.00)	(0.00)	(0.00)	(5.02)	(0.08)	(100.00)
합계	0	0	0	366	0	0	0	0	0	19	0	386
	(0.00)	(0.00)	(0.00)	(94.90)	(0.00)	(0.00)	(0.00)	(0.00)	(0.00)	(5.02)	(0.08)	(100.00)

- 주1)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 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현대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여의도동), 전경련회관 38층 (연락처 : 02-2090-0500, www.hyundaiam.com)
회사 연혁	2008. 11. 24 현대펀드주식회사 법인 설립 2009. 06. 17 집합투자업 등록 2009. 06. 17 현대펀드(주)에서 현대자산운용(주)로 상호변경 2009. 07. 30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등록 2010. 03. 18 2009 아시아경제 펀드대상 「라이징스타펀드」수상 2010. 11. 30 2010 헤럴드경제 펀드대상 「최우수 신규펀드」수상 2011. 02. 08 2010 매일경제 펀드대상 「최우수상」수상 2011. 02. 24 2011 아시아경제 펀드대상 「최우수상」수상 2012. 02. 28 2011 아시아경제 펀드대상 「최우수상-굿디자인상」수상 2014. 11. 17 2014 헤럴드경제 펀드대상 「최우수 국내펀드 중소형부문」수상
자본금	300억
주요주주 현황	(주)무궁화신탁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 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억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과목	2021.12.31	2020.12.31	과목	2021.01.01~ 2021.12.31	2020.01.01~ 2020.12.31
현금및예치금	136	139	영업수익	378	213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71	20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43	0.4	영업비용	385	193
관계기업투자	16	2			
대출채권	10	20	영업이익	-7	20
유형자산	65	76			
무형자산	14	13	영업외수익	2	0.2
기타자산	160	163			
자산총계	515	433	영업외비용	0.1	0.5
기타부채	188	89			
부채총계	188	89	법인세차감전이익	-6	20
자본금	300	300			
이익잉여금	28	45	법인세비용	3	7
기타자본구성요소	-	-			
자본총계	327	344	당기순이익	-8	13

라. 운용자산 규모(2022.10.11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 권					부동산 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 산파생	MMF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555	6,925	1,190	1,584	2,305	25,579	9,883	1,582	29,697	79,30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 개요

회 사 명	(주)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02-2131-60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1959.12설립 (http://www.hanabank.co.kr)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회사 개요

회 사 명	(주)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02) 2180-0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0.06 회사 설립 2008.0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www.shinhanaitas.com)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 개요

회 사 명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주소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02-398-390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 02-721-530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 02-399-335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www.koreaap.com	www.bond.co.kr

(2)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 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 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 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 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 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이 투자신탁을 임의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증개업자별 거래
- 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hyundaiam.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 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 거래	1)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편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2) 선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중개회사 평가를 통해 중개회사와 중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 - 운용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음 -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름 -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 -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위탁을 지정할 수 없음. 단, 블록트레이딩(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음 3) 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함 -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함 -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 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 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펀드 기준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펀드 운용성과의 척도로 사용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모펀드 수익증권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형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펀드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가입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환매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환매수수료는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수익자들이 모여 의사결정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 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투자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해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금리스왑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